공 사 계 약 서

갑 : (주) I P S

을 : (주)중앙환경엔지니어링

계 약 서 시

공 사 명: 모수처리시설 보강교수.

录外 图 위:下户·杨利里入长 CB.O.D. 55. 20 PPM 中的) 人以外流至

1000000)到了以外下增生

제1조 : (주) I P S 을 "갑"이라 칭하고, (주)중앙환경엔지니어링 을 "을"이라 칭한다.

제2조: 대금지불

"갑"은 "을"에게 위 공사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1)계약금:

2)중도금:

3)잔금(시운전 완료후)

就多于 机合入市

からりい

제3조 : 공사시공

"을"은 "갑"이 승인한 설계도면과 시방서 및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시공상 설계변경이 필요할 시 "갑" "을"쌍방이 협의 조정한다.

제4조 : 공사완료

1)"을"은 2001 년 / 나월 / 이일 까지 본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
2)원청자의 검수및 준공검사는 "을"의 책임으로 한다.

제5조: 지체상금

1)"을"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"갑"의 공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"을"은 공사완료일자 경과후 2일째부터 지체 매1일마다 총 계약금액의 5/1000을 지체상금으로 "갑"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

2)(1)량의 지체상금을 "갑"은 잔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다.

제6조: 이행보증

1)"을"은 "갑"에게 계약금액의 <u>/ º %</u>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예치한다. 2)"을"은 공사완료일로 부터 1년간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며, 공사예약료의 <u>/ º %</u>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"갑"에 예치한다. 제7조: 손해보상

"갑"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은 "을"에게 귀속되며 "을"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"을"이 배상하여야 한다.

제8조: 재해등

본 공사시행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"을"의 책임으로 한다.

제9조: 비밀누설 등

"을"은 본 공사 진행중 습득한 업무상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이로 인하여 물의가 야기될 경우 "을"의 책임으로 한다.

제10조: 계약해지 등

"을"이 본 공사에 대해 공사진행 과정에서 뚜렷한 무성의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자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시 "갑"은 "을"에게 공사포기를 요구 할 수 있고, "을"은 공사포기를 하여야 한다.

제11조:기타
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, 민법, 기타 상관리에 따른다.

제12조 :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"갑" "을"각각 서명 날인 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3조: "을"은 본 공사를 시공완료는 물론 시운전을 완료하고 원청자의 현장감독으로 부터 시공완료 및 시우전완료 확인서를 득하여 "갑"에게 인지하여야 하다.

2001년 // 월 / 0일

全:京農道 平澤市 芝制洞 33

立:(株)이이 피 鄉區

대표이사:代表理事 李 鎔 漢

소: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33-1 "을" 주

호 : (주) 중앙환경엔지니다링

대표이사 : 이

2 전화 :(031) 652 - 30019

· (3) 01/2/10/2/

시 방 H



2001.11.08

- 1. 본 공사는 ㈜아이피에스 오수처리시설(H.B.C)보강공사라 칭하며,건축설비기술기 준 및 환경부 오수.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(시행령,시행규칙)에 적 합한(환경기준) 시설공사을 하여야 한다.
- 2. 2002.01.01일부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현행기준(BOD,SS 20PPm이하)이 적용됨 에 따라 본 시설(오수처리시설보강공사)후 현행기준에 적합한 시설보강공사을 하여야 한다.
- 3. 유입량이 변동(50㎡/day이내)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4.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.
- 5.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,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.(- Root's Blower는 한국유체㈜제품 사용한다.)
- 6. 오수배관은 폐쇄,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7. 점검.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8.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.
- 9. FRP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.
 - 가. 기초공사는 지반 및 구조물 윗 부분의 하중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수평 을 유지하고 내려 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나. 하부 토목공사는 잡석&버림 콘크리트&모래을 사용하여 보호 하여야 한다.
- 10. 기계.장비 등은 이를 직접 제작하거나 한국산업규격❸이 있는 경우에는 KS표시 허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11. 전기제품중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12.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현장 정리 및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.
- 13. 저압 시공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공을 하여야 한다.
- 14.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 및 케이블은 상별색상 구분이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15. 기계기구 및 전선은 KS규격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강도가 있는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(각Pump EOCR을 사용한다).
- 16. 앙카 BOLT의 매설,기기의 설치,전선관의 배관등으로 기존 콘크리트에 작업할시 에는 작업후 누수가 스며들지 아니하게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.
- 17. 본 공사는 시공조건(별첨)을 준수하여 시공한다.

시 공 조 건



2001.11.08

- 1. 공사 수행 방법 : 공사 시공 내용은 별첨 내역서에 준하며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 하겠음.
- 2. 입회시공 : 준공 후 도는 공사중 이더라도 검사하기 불가능한 시공 부분은 귀 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겠음.
- 3. 허가 및 기타 : 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제반 관허가 및 대인관계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이 일체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며 허가 및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비용도 본인이 지겠음.(단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대관청 납부액은 귀사의 지원을 받아 본인이 책임지고 처리하겠음.)
- 4. 공사중지 또는 해약권의 범위 : 본 공사 시공에 있어 만약 시공 자재를 조잡하 게 하거나 본 공사 준공 기한내에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귀사에서 인정했을 때 는 귀사 일방적으로 잔여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임의 집행 및 기성금을 미지급 임의 처리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.
- 5. 공사완료후 오수처리조건 : BOD,SS 20 PPm 이하유지
- 6. 유지보수계약 : 2002년7월1일부터 시행.

끝.